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80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김 경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경우, 김기대, 김인제,
김제리, 김태수, 김희걸,
문장길, 박기열, 박상구,
박순규, 송명화, 송아량,
송정빈, 양민규, 유 용,
이영실, 이준형, 장상기,
전병주, 전석기, 최 선,
홍성룡, 황규복 의원(23
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20년 반려 동물 가구수는 638만 가구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
- 그러나 동물병원 진료비는 여전히 높아 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.
- 이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에 대하여 반려동물 지원비를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취약계층의 심신안정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취약계층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제10호).

나. 시장이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4조제4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동물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“취약계층”이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.

제24조의 제목“(동물보호업무의 지원)”을“(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)”으로 한다.

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취약계층에 대하여 반려동물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기준 및 범위,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9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“<u>취약계층</u>”이란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.</p>
<p>제24조(동물보호업무의 지원) ① ~ ③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4조(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시장은 취약계층에 대하여 반려동물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이 경우 지원기준 및 범위, 지원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